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7
----------	------

제출년월일 : 2011. 6.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자에게 하수발생량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도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및 감면·면제 사항의 재조정과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을 신설 (안 제19조의2)
- 나.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면제 사항 등을 신설 (안 제21조, 안 제23조)
- 다.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25조)
- 라.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 법규 조정 (안 제26조)
-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업종 및 요율 조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 (안 별표1, 안 별표4)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다음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 자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부모·조손가족

제26조 제2항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환경사업소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환경운영담당 조성옥
	담당자 성명·전화	이종춘 860-3194

[별표 1] 〈개정 2011. 0. 00.〉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16	173
	17 ~ 33	236
	34이상	278
일 반 용	1 ~ 23	304
	24 ~ 46	334
	47 ~ 70	364
	70이상	395
산 업 용	1㎥당	243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사용 업종별구분표

업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일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일반용	·가정용과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시설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1. 0. 00.>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오수량 : m³/일)

구분	최초 행위시 오수발생 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 량(B)	총오 수량 (C) (A+B)	부과 량(D)	적용 방법	증가 량(E)	총오 수량 (F) (C+E)	부과 량(G)	적용방법
기존건축물의증축및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 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 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한 건 축물의 오수발 생량은 0으 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이후 신축 건축 물	5 (미부과)	3	8	-	(A)+(B) <10 미부과	1	9
7	15							5	(A)+(B)+(E) >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 >10 초과 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한 건 축물의 오수발 생량은 0으 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 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 과 같은 방 식으로 원 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 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기존 건축물은 2009. 9. 21. 조례 개정 이전 건축물이고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은 2009. 9. 21 조례 개정 이후 신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3.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4.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현행	개정안
제25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생략)	제25조(감면)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한부모·조손가족 6.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 ----- ----- -----. ② -----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의 -----.

입법예고 의견 사항 및 검토 결과

□ 의 견 자

- 동두천시의회 의원간담회 (5월 11일)
- 동두천시 피혁공업사업 협동조합 (5월 13일)
- 동두천시 염색사업 협동조합 (5월 16일)

□ 의견 사항

- 하수도 사용료 중 산업용 인상율이 45%로 산업체에서는 많은 부담이 됨
- 이에 산업용 사용료 인상율을 낮추어 주기 바람

□ 검토 결과

- 산업용 인상율을 기존안 45%(톤당 261원) → 조정안 35%(톤당 243원)

환경부 생활하수과(2010.9.30)

표준 하수도조례 기준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text{m}^3/\text{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text{m}^3/\text{일}$ 이상인 경우 $10\text{m}^3/\text{일}$ 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text{m}^3/\text{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text{m}^3/\text{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text{원}/\text{m}^3/\text{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감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분류식 지역	합류식 지역	하수관거 사용지역
일 반 용					
영 업 용					
욕 탕 용					
산 업 용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m³당 단가 구분

- 가. 분류식 지역 :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구분	최해의오수량(A) 초행시발정수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B)	초오수량(C) (A+B)	부과량(D)	적용방법	증가량(E)	초오수량(F) (C+E)	부과량(G)	적용방법
기존건축물의증축·용도변경	0 ※ 기존오수량으로 0톤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한 건축 물의 오수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범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 <10 미부과	1	9	-	(A)+(B)+(E) <10 미부과
						7	15	5	(A)+(B)+(E) >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 >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한 건축 물의 오수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 과 같은 신축 건축물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 (간선관거) 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 의 일 자 : 2011. 7. 7

발의자 : 장영미 의원외 인

1. 수정안의 제안이유:

본 수정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 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여나가 안정적인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에서 정한 가정용을 제외한일반용(업무용)과 산업용의 인상율을 변경 조정하여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관내 중소기업체에 관심과 도움을 주어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금번 제21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4차 및 5차 토론 과정에서 본의원의 건의안이 의원들간 협의되었으므로 건의안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수정안의 주요골자 :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표1(공공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 및 업종구분표)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수정전)원	㎥당 단가 (수정후)원
가 정 용	1 ~ 16	173	173
	17 ~ 33	236	236
	34이상	278	278
일 반 용	1 ~ 23	304	303
	24 ~ 46	334	315
	47 ~ 70	364	328
	70이상	395	342
산 업 용	1 ㎥당	243	234

수정안에 의한 대비표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 구분표>

제출안			수정안		
구분 업종	사용요율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	㎥ 당 원가		사용구분 (㎥)	㎥ 당 원가
가정용	1~16	173	가정용	1~16	173
	17~33	236		17~33	236
	34이상	278		34이상	278
일반용	1~23	304	일반용	1~23	303
	24~46	334		24~46	315
	47~70	364		47~70	328
	70이상	395		70이상	342
산업용	1 ㎥ 당	243	산업용	1 ㎥ 당	234